

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

1. 개정이유

- 시장운영의 자율성 확대, 장기결제월물(주식상품) 상장,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등과 관련하여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여 파생상품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질적성장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시장 운영의 자율성 확대 (§4의4 등 31개 조)

- 시장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규정에서 세칙으로 새롭게 위임한 사항을 정하여 시장 운영의 자율성 확대
 - 모든 상품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호가수량단위(1계약) 및 거래수량단위(1계약)를 상장상품 제2편에 총칙(제1장)으로 신설
 - 종목수(결제월 · 행사가격), 호가가격단위, 최종거래일, 최종결제일, 최종결제가격, 권리행사유형 등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명시

나. 장기결제월물 상장 (§4의6, §5의2 및 §8의4)

- 기관투자자의 장기 · 헤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코스피200선물 등 주식상품에 최대 3년까지 거래가 가능한 장기결제월물 상장

【 장기결제월물 도입 】

구분	현 행			개 선		
	거래기간	결제월	개수	거래기간	결제월	개수
코스피200선물 (\$4의6)	1년	분기월	4개	<u>1년</u> <u>2년</u> <u>3년</u>	<u>3월·9월</u> <u>6월</u> <u>12월</u>	<u>2개</u> <u>2개</u> <u>3개</u>
코스피200옵션 (\$5의2)	3개월 6개월	비분기월 분기월	2개 2개	<u>6개월</u> <u>1년</u> <u>2년</u> <u>3년</u>	<u>비분기월</u> <u>3월·9월</u> <u>6월</u> <u>12월</u>	<u>4개</u> <u>2개</u> <u>2개</u> <u>3개</u>
주식선물 (\$8의4)	1년	분기월	4개	<u>1년</u> <u>2년</u> <u>3년</u>	<u>3월·9월</u> <u>6월</u> <u>12월</u>	<u>2개</u> <u>2개</u> <u>3개</u>

* 주식옵션의 장기결제월물은 '14.11.17 시행이며, 코스피200선물 글로벌거래의 경우에는 시스템 개발 등을 감안하여 추후 시행 예정

【 장기결제월물 신규상장 】

결제월 상품	2014				2015												2016												결제월 수
	9	10	11	12	1	2	3	4	5	6	7	8	9	10	11	12	1	2	3	4	5	6	7	8	9	10	11	12	
코스피200 선물	●			●			●			●					◆													◆	7개
	1년			3년			1년			2년					3년													3년	
코스피200 옵션	●	●	●	●	◆	◆	◆			◆					◆													◆	11개
	1년	6월	6월	3년	6월	6월	1년			2년					3년													3년	
주식선물	●			●			●			●					◆													◆	7개
	1년			3년			1년			2년					3년													3년	

* ● : 기존 상장 종목, ◆ : 신규상장종목, 기간은 거래기간을 의미

다. 코스피200옵션 행사가격 수 확대 (§6)

- 코스피200옵션의 장기결제월물 상장에 따라 장기 가격변동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행사가격의 수 및 간격 확대

【 행사가격 간격, 수 및 범위 】

잔존 거래기간	현 행			개 선		
	수	간격	범위	수	간격	범위
최근 연속 3개월	총 13개(상하 6개)	2.5P	15P	총 25개(상하 12개)	2.5P	30P
4개월 ~ 6개월	총 7개(상하 3개)	5P				
6개월 초과~1년 이내	-		총 13개(상하 6개)	5P		
1년 초과	-		총 7개(상하 3개)	10P		

라. 주식선물·옵션의 상장 및 상장폐지 자율화 (§8, §8의2 및 §8의3)

- 기초주권의 선정기준을 일부 보완하고 정기변경·수시변경을 통하여 기관투자자 등 시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

○ 정기변경 : 선정기준을 충족*하는 종목은 추가상장(매년 6월 말일 기준)

* 다만, 선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주권을 발행한 법인의 계속성, 경영 안정성, 상장 적격성 및 투자자보호를 고려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 제외 가능

- 기존에 선정된 주권도 선정기준에 미달하거나 7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동성관리상품으로 지정되는 경우 기초주권에서 제외

○ 수시변경 : 기초주권이 주식시장에서 관리종목, 단기과열종목 또는 정리매매종목으로 지정 시 해당 기초주권을 제외하고 다른 기초주권으로 변경하여 기초주권수를 일정수준 유지

○ 기초주권의 정기변경·수시변경에 따라 해당 기초주권을 기초로 하는 주식선물·옵션은 새로이 상장하거나 상장폐지

* 주식선물의 경우 기초주권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35개 종목을 추가 상장

【기초자산 선정기준】

구분	유동성 기준	안정성 기준
규정 사항	▪ 유통주식수 1천만주 이상	▪ 주식시장에 상장 * 「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」에 따라 대응증권에서 제외되는 주권은 기초주권에서 제외
	▪ 소액출자자수 1만명 이상	
	▪ 1년간 거래대금 5천억원 이상	
세척 사항	-	▪ 직전 3사업연도 이내 사업보고서상 100분의 50 이상의 자본잠식이 없는 법인이 발행
		▪ 직전 3사업연도 이내 감사보고서상 감사 의견이 적정인 법인이 발행
		▪ 직전 3사업연도 이내 사업연도 중에 회생 절차, 채권은행의 공동관리·경영관리가 개시되지 아니한 법인이 발행
		▪ 직전월부터 소급한 36개월 이내의 기간에 단기과열종목*으로 지정된 횟수가 2회 이내인 법인이 발행(신설) * 「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」에 따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주권 종목
		▪ 직전월부터 소급한 6개월간 일평균 증가가 액면가액의 150% 이상 * (현행) 액면가액(100%) 이상 → (개선) 액면가액의 150% 이상

* 음영 처리된 부분은 제도 개선(신설) 사항임

마. 주식선물 호가가격단위 확대 (§10의2)

□ 저유동성 종목의 호가제출을 유인하기 위하여 주식선물의 호가가격단위를 2배 확대하여 기초자산인 주식시장과 일치

【 주신선물 호가가격단위 개선 】

주식선물 가격	호가가격단위		호가단위/가격(변경후)
	기존	변경 후	
1만원 미만	5원	10원	0.1% 이상
1만원 이상 ~ 5만원 미만	25원	50원	0.1%~0.5%
5만원 이상 ~ 10만원 미만	50원	100원	0.1%~0.2%
10만원 이상 ~ 50만원 미만	250원	500원	0.1%~0.5%
50만원 이상	500원	1,000원	0.2% 이하

바. 협의대량거래 제도 개선 (§67의4, §68, §69 및 §70)

- 경쟁거래 자체 또는 협의거래 수요가 거의 없는 상품을 제외한 모든 상품에 협의대량거래를 도입하고 시장참여자 편의를 위하여 신청시간 확대
- 협의대량거래 신청수량은 거래편의를 고려하여 설정하고, 가격범위는 협의대량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협의대량거래가격제한폭 범위로 일원화

【 협의대량거래 제도 개선 】

구 분	현 행	개 선
대상상품 확대 (§67의4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3년국채선물 ▪ 미국달러선물 ▪ 엔선물 ▪ 유로선물 	(현행) +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코스피200선물(정규) ▪ 코스피200옵션(정규) ▪ 미니금선물
신청시간 확대 (§68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정규거래 개시 10분 후부터 종가단일가시간 개시 10분 전까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정규거래 개시 5분 후부터 종가 단일가시간 개시 전까지(15분 확대)
신청수량 (§7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3년국채선물 : 500 ~ 3,000 ▪ 미국달러선물 : 500 ~ 15,000 ▪ 엔·유로선물 : 200 ~ 15,000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3년국채선물 : 500 ~ 5,000 ▪ 미국달러선물 : (좌동) ▪ 엔·유로선물 : (좌동) ▪ 코스피200선물 : 100 ~ 5,000 ▪ 코스피200옵션 : 100 ~ 10,000 ▪ 미니금선물 : 50 ~ 1,000
가격범위 (§69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선물거래 : 협의대량기준가격 ± 협의대량거래가격제한폭의 범위 이내 * 협의대량기준가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준종목(전일 약정수량이 가장 많은 종목) : 직전약정가격 - 기준종목 이외 종목 : 기준종목 직전약정가격 + (당일 해당종목 기준가격 - 당일 기준종목 기준가격) - 직전 10분간 기준종목의 약정가격이 없는 경우 : 기초자산 직전가격 + (당일 해당종목 기준가격 - 전일 기초자산 기준가격) * 협의대량거래가격제한폭 = 협의대량기준가격 × 별표 26의 가격제한비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코스피200선물 0.5%, 3년국채선물 0.1%, 통화선물 0.5%, 미니금 선물 0.8% ▪ 옵션거래 : 협의대량기준가격 ± 협의대량거래가격제한폭의 범위 이내 * 협의대량기준가격 : 직전약정가격, 다만 직전 10분간 약정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옵션거래의 기준가격 * 협의대량거래가격제한폭 : 20%, 다만 직전 10분간 약정가격이 없는 경우 80% 	

* 주식선물·옵션의 협의대량거래는 11월 도입 예정

사.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(§80 등 11개 조)

- 시장조성자의 의무 및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상시적이며 실질적인 시장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
 - 시장조성자 자격, 대상상품·종목·기간을 확대하여 시장조성의 여건 개선
 - 시장조성호가의 제출간격, 수량, 시장조성 평가기준 등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사항은 시장조성계약으로 위임
 - 시장조성자 이외에 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자(시장기여자)에 대하여 거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

【시장조성자제도 개선 주요내용】

구분	현행	개선
자격 (§80)	▪ 투자매매업자인 결제회원	▪ 모든 회원
상품 (§81)	▪ 신상품 및 유동성관리상품	▪ 유동성 공급이 필요한 모든 상품
종목 (§81)	▪ 선물거래 : 최근월종목 ▪ 옵션거래 : 등가격 ± 1개 이상	▪ 모든 종목. 다만, 시장조성계약에서 정한 종목은 시장조성 의무종목임
기간 (§81)	▪ 12분기 이내	▪ 4분기 이상
시장조성계약 (§82)	▪ 분기단위 계약	▪ 최초 4분기 이후 분기단위 연장
조성방식 (§83)	▪ 양방향, 일방향호가 제출	▪ 양방향 호가 제출
인센티브 (§90 · §90의2)	▪ 수수료 면제 / 타회원 납부 수수료 수입 배분	▪ 거래실적에 연동한 인센티브 지급 - 전문투자자 등 거래기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신설

아.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조문정비 등 (§2 등 98개 조)

-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일본식한자어, 불명확한 표현, 맞춤법에 어긋나는 표현을 정확하고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

【 조문 정비(예시) 】

변경 전	변경 후	변경 전	변경 후
정의	뜻	한하여	한정하여
세척이	세척으로	당해	해당
~함에 있어서	~하는 경우, 할 때에	대하여	에(게)
하여금	~에게, ~을	행하다	하다, 수행하다
○○%	100분의 ○○	~에 있어(서)	~에서
(날)로부터	(날)부터	6월 단위 : 월	6개월 단위 ※ [기간] 개월, [날짜] 월
일방	어느 한쪽, 한쪽	타방	다른 쪽
그러하지 아니하다	① 문맥에 맞게 풀어 씀 ② 제외한다, 예외로 한다	하고자 하는 때에는	하려는 경우에는